

「학교돌봄터 사업」 지자체 선정 공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돌봄터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학교돌봄터 사업 공동추진단(복지부·교육부 공동단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학교돌봄터 사업

□ 사업지역: 지자체 공모 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시·군·구 선정

□ 예산: 4,040백만원(국비 기준)

※ 설치비는 교육청 100% 부담

※ 운영비(인건비 포함)는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1:1:2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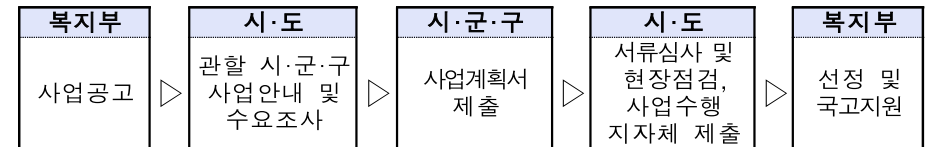
□ 사업기간: '21.9월 ~ 12월

□ 사업내용: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2. 지역 공모 · 선정

□ 사업신청

○ 시·도에서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선정기준

○ 운영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 추진기반 마련 등 평가

□ 선정평가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시·군·구 선정

3. 추진일정

□ 학교돌봄터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 신청서 접수(~3.5.)

○ 지자체 선정 및 지원금 확정(3월 2주)

○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3월 2주)

☐ 학교돌봄터 사업 사전준비

- 사업지침 제작·배포(~3월)
- 지자체별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4월)
- 지자체·교육청별 추경 편성 등(3~6월)
- 사업지원단 설치·운영 및 사업 컨설팅 실시(7월~)
- 지자체별 학교 공간 리모델링(방학 중)

☐ 학교돌봄터 사업 실시

- 지자체별 학교돌봄터 운영(9월~)
- ‘학교돌봄터 원스톱 시스템’ 구축(정부24 內)(~12월)

4.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1.3.5(금) **18:00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제출**
- 제출서류: 「**학교돌봄터 사업 지자체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기초지자체 내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단위로 기초지자체가 작성하여 제출
 - 제출 시 업무협약서(기초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기초지자체-학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공문으로 제출

☐ 기타사항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 평가 등을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문의 : 보건복지부 마을돌봄TF 윤석범 사무관(☎044-202-3361)
이희경 주무관(☎044-202-3365)

5. 참고자료

☐ 참고1: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

☐ 참고2: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계획서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

2021. 01. 29.



관계부처합동

차 례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추진 방향	3
III.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	4
IV. 사업신청 및 지원 · 선정기준	7
V. 향후 추진 일정	10
[붙임 1] 표준업무협약서(안)	11
[붙임 2]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안)	13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국가를 구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필요
-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증하는 데 반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 *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0~5세), 누리과정(3~5세) 지원 등
 - ** 공적 돌봄 이용률('19년): 영유아 85%(200/235만명), 초등학교 14.5%(40/275만명)
- 수요자(아동) 중심 돌봄 제공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필요
- '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 확대 필요
- '20년말 기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통해 42.1만명(정원 기준)으로 돌봄 확대('20년 목표 40.8만명 대비 1.3만명 초과)
 - * (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21년부터 학교돌봄터 사업 신규 추진을 통한 돌봄 제공(3만명) 필요

♦ (온종일 돌봄계획, '18. 4.) ('17년) 33만명 → ('22년) 53만명 수준

	'17년	확 대	'22년
학교돌봄	24만	7만 (초등돌봄교실, 3,500실) 3만 (활용가능교실, 지자체 협업, 1,500실)	34만
마을돌봄	9만	10만	19만
총계	33만	20만	53만명

2. 추진 경과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학교가 연계한 돌봄모델 발굴('18.4.~'20.12.)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

- (2개 지역) 학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운영
 - (충남 홍성) 홍성초, 홍주초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돌봄 제공
 - (전남 광양) 광양제철초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돌봄 제공
- (7개 지역) 주민 커뮤니티시설, 아파트 단지 등을 이용하여 운영
 - (서울 구로, 노원, 성동, 성북/대전 서구/경기 시흥, 오산)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아파트단지 내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돌봄 제공

-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발굴('19.10.~'20.3.)
- 관계부처,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마련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학교돌봄터 사업의 운영주체* 및 재원분담 비율** 등을 확정('20.6. ~ '20.8.)
 - * 지자체가 운영 주체로서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는 돌봄공간을 제공
 - ** 시설비는 교육청 전액 부담, 운영비는 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로 분담
 -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 의견수렴('20.12월)
 - * 사업의 운영방식, 지원유형, 돌봄종사자 처우 등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 심의·의결('21.1.19.)
- 「학교돌봄터 사업 공동추진단 설치·운영 규정」 발령·시행('21.1.21.)
 - * (근거) 보건복지부 훈령(제168호), (단장) 복지부·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공동 단장

II. 추진 방향

❖ 지자체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서로 연계·협력하여,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 제고

-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내 돌봄교실(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21~'22년 돌봄 수혜인원 3만명 확대
-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학부모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돌봄의 질 향상
- * 기존 학교 돌봄교실의 통상 운영시간(13:00~17:00)보다 2시간 연장

□ 지자체 중심의 공공성이 보장된 돌봄 제공

-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 설치·운영
-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며, 위탁 시에도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
- * 질 높은 사회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20년 총 11개 운영 중('21년 3개, '22년 3개 신규 설립 목표)

□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 도모

- 마을돌봄 및 학교돌봄과 동일하게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 마을돌봄('20.6. 구축), 초등돌봄교실('21.1. 구축), 학교돌봄터('21.下 구축 예정)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돌봄전담사의 신분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용성 제고

III.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

1. 사업 주요내용

- (기본방향) 학교가 활용가능교실 등 돌봄 제공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운영 형태)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 운영
 - (지자체) 학교돌봄터 운영을 통한 돌봄 제공 및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등 운영·관리 책임
 - (학교)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 제공 및 학교시설(운동장 등) 이용 지원
- (이용 대상)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
 -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우선 이용 대상자 선정 가능
- (운영 시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00~17:00)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틈새돌봄* 또는 돌봄시간 연장 제공**
 - * 정규수업 전 아침돌봄(07:00~09:00), 방과후 저녁돌봄(17:00~19:00) 등
- (인력 배치) 실당 업무 담당자 1명, 학교당 관리자 1명 원칙
- (운영 방식)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 위탁 시 학교돌봄터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출연·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권장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지원) 학교돌봄터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등 지원

○ (시설비) '21년 750실 리모델링비 225억원 지원

- 시·도교육청(지방비)에서 전액 부담

○ (운영비) '21년 750실 인건비·기타운영비 158억원 지원

- 복지부(국고), 교육청(지방비), 지자체(지방비)*가 1:1:2비율로 분담

* 지방비(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되, 분담비율은 시·군·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결정

- ✓ 교실당 지원단가는 시설비 30백만원(초등돌봄교실과 동일), 운영비* 연간 63.2백만원
- * ①4시간 운영 600실(인건비 1인당 월 204만원(6시간 근무), 기타운영비 월 200만원)
- ②6시간 운영 150실(인건비 1인당 월 272만원(8시간 근무), 기타운영비 월 200만원)
- ✓ 시·도교육청 지방비(시설비,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
- ✓ '21년 신규설치 교실에 대한 운영비는 4개월(9~12월)분만 지원

< '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총 사업비 >

구분	계	시설비	운영비			
		교육청(지방비)	소계	복지부(국고)	교육청(지방비)	지자체(지방비)
'21년 예산	383억	225억 (30백만원x750실)	158억	39.5억 (63.2백만원x750실 ÷3x0.25)	39.5억 (63.2백만원x750실 ÷3x0.25)	79억 (63.2백만원x750실 ÷3x0.5)

2. 사업 추진체계

□ (중앙정부) 복지부-교육부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

○ (공동추진단) 복지부-교육부 간 '학교돌봄터 사업 공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사업공고, 사후관리 등 역할 수행

○ (복지부) 운영비(국고) 교부, 지자체의 사업 참여 독려, 지자체 사업추진 관리·점검 등

※ (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컨설팅 등 지자체 운영지원 및 사업관리 실시

○ (교육부) 시설비·운영비(보통교부금) 교부, 학교 공간 정보 제공, 학교의 사업 참여 독려 등

□ (지방정부)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돌봄협의회*를 통한 협의

*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돌봄 관련 전문가, 돌봄시설 운영자 등으로 구성

○ (광역지자체) 예산 편성, 광역돌봄협의회 운영 및 시·도 교육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 시·군·구 관리·감독

○ (기초지자체) 예산 편성, 기초돌봄협의회 운영 및 교육지원청·학교와 협조체계 구축(업무협약 체결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지원, 광역돌봄협의회 등 광역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 관할 학교의 사업 참여 독려 등

○ (교육지원청) 기초돌봄협의회 등 기초지자체·학교와 협조체계 구축(업무협약 체결 등), 관할 학교의 사업 참여 독려 등

○ (학교) 활용가능교실 등 제공,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 지원

- ※ 학교돌봄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함께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 같은 학교 내에서 지자체 돌봄과 학교 돌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지자체 돌봄종사자와 학교 돌봄전담사 등과의 협의체 구성 권장

< 사업추진 체계도 >



Ⅳ. 사업 신청 및 지원 · 선정기준

1. 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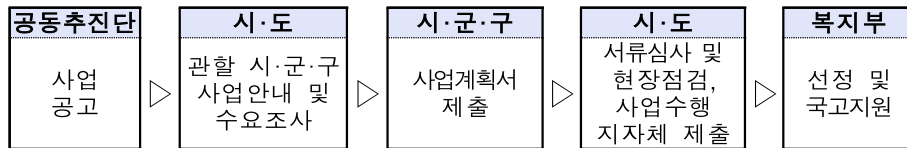
□ (신청 대상) 17개 광역지자체 및 228개 기초지자체(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신청**

* 기초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 간 사전 업무협약 체결

** (사업 추진일정) 지자체 사업 신청(~3.5.) → 추경 편성 등(3월~6월) → 공간 리모델링(7월~8월) → 학교돌봄터 운영(9월~12월)

□ (신청 및 선정절차)



○ (시·군·구)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확보, 수행방식, 세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도에 제출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업무처리절차

(업무협약) 기초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 (교육청에 보고) 교육지원청이 시·도 교육청에 보고 ⇒ (추경 편성) 시·도 교육청 추경 편성 ⇒ (교부금 전출) 시·도 교육청에서 광역지자체로 설치비·운영비 등 전출 ⇒ (예산 교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설치비·운영비 등 교부

- 공간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 신청 시 업무협약서·학교시설 사용 협약서 첨부*

* 【붙임1】의 표준업무협약서(안) 및 【붙임2】의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안)를 참고하되, 지자체별 상황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수정 가능

○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서, 시·도 사업규모 등 검토 및 현장 점검(필요시)을 통해 사업수행 대상 기초지자체 명단 제출

○ (복지부) 시·도 추천 명단을 기준으로 사업수행 기초지자체 선정 및 운영비 등 국고지원

2. 지원 기준

□ (선정 규모) '21년 총 750실(1.5만명) 선정

○ *4시간 운영 600실, *6시간 운영 150실 구분하여 선정

※ 현장 수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지원 가능

□ (지원 유형 및 조건) 학교돌봄터 신규설치를 조건으로 하되,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유사 돌봄서비스 제공 중인 경우 운영비 지원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운영비 지원

◦ (예시) A지자체가 B초등학교(예 : 초등돌봄교실 3개 운영 중) 내에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학교돌봄터 1개를 신규로 설치·운영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신규 학교돌봄터에는 시설비·운영비, 전환한 학교돌봄터에는 운영비 지원

◦ (예시) A지자체가 B초등학교(예 : 초등돌봄교실 3개 운영 중) 내에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학교돌봄터 1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초등돌봄교실 3개 중 1~3개를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총 2~4개의 학교돌봄터 운영

○ 동 사업 시행(공고)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재원부담 구조, 인력·시설 기준 등을 동 사업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여 신청 필요

□ (돌봄 전환) 학교돌봄터 신규설치 시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 여부는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고 있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

※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학교돌봄터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학교돌봄 확대 목표('22년 31만명)는 다른 학교를 통해 충당할 계획

3. 선정 방향 및 선정기준

- (선정 방향)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지자체를 선정
 - 선정규모 대비 신청이 많을 경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지자체 중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큰 기초지자체를 우선 선정
- (선정기준) 운영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 추진기반 마련 등 아래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운영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우수성, 공공성 등 사업운영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우수성) 서비스 제공계획*, 안전대책 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법 마련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
 - * 업무협약서·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 첨부 여부,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정성, 운영시간 등이 동 사업 국고지원 최소 기준에 부합할 것
 - (공공성)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며,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권장
 - (사업의 효과성) 효용성, 공간의 적정성 등 사업의 효과성
 - (효용성)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등 사업의 효용성
 - (공간의 적정성) 아동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최소 3.3㎡의 공간확보 필요하며, 유휴교실 활용을 권장*
 - * 교실 외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돌봄에 적합한 공간 사용
 - (사업 추진기반 마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회, 학교·교육청과의 협의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

V. 향후 추진 일정

사업 공고 및 사업 설명	- 사업 공고(1월 5주) 및 신청서 접수(~3.5.) - 지자체 · 교육청 대상 사업 설명(2월 중)	1월 ~ 3월
↓		
지자체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자체 선정 및 지원금 확정(3월 2주) -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3월 2주)	3월
↓		
사업 세부계획 수립	- 사업지침 제작·배포(~3월) - 지자체별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4월)	3~4월
↓		
추경 편성	지자체 · 교육청별 추경 편성 등(3~6월)	3~6월
↓		
공간 리모델링	- 사업지원단 설치·운영 및 사업 컨설팅 실시(7월~) - 지자체별 학교 공간 리모델링(방학 중)	7~8월
↓		
학교돌봄터 운영	- 지자체별 학교돌봄터 운영(9월~) '학교돌봄터 원스톱 시스템' 구축(정부24內)(~12월)	9~12월
↓		
추진상황 점검·관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관리(계속)	계속

지자체-교육청-학교 학교돌봄터 표준업무협약서(안)

○○시(○○군·○○구)와 ○○교육청·○○학교는 학교 내 활용가능한 교실 등을 이용하여 초·중·고등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21.1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장(또는 교육감), 학교장과 협력하여 지역 내 초·중·고등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학교돌봄터라 함은 학교가 활용가능한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초·중·고등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② ○○시(○○군·○○구)가 ○○초등학교 내에 설치·운영하는 학교돌봄터의 명칭은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로 한다.

제3조(협력 분야)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가. 학교돌봄터 설치·운영
 - 나. 학교돌봄터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 확보
 - 다. 학교돌봄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라. 학교돌봄터 운영 인력 질 관리
2. 교육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가.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 지원
 - 나. 학교돌봄터 설치비 및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 확보
 - 다. 학교 간 연결망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학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가. 학교돌봄터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 사용허가
 - 나.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운동장, 도서관, 강당, 급식실 등 학교시설 사용허가
 - 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협력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는 안정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4조(이용 대상 및 운영 시간)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 및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 ○○ ~ ○○, 방학 중 ○○ ~ ○○으로 한다.

제5조(비용 부담)

- ①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용은 보건복지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1:1:2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 ②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중·고등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규 학교돌봄터 시설의 설치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용은 보건복지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1:1:2비율로 각각 분담하며, 전환한 학교돌봄터의 운영비용은 보건복지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1:1:2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제6조(협약 기간 등)

- ① 협약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 ② 이 협약서는 협약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 여부 등을 정한다.

제7조(의무 및 책임)

- ① 협약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 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시설에 대한 보안 확보 등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변경 및 해지 등)

- ①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때 이 협약서는 해지된다.
- ③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학교돌봄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의 돌봄에 차질에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9조(협약서의 해석 등)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장(또는 교육감)
○○○		○○○	○○○
			○○○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안)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아래 표시 교실 및 부속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대해 ○○초등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건물 등의 표시

부동산 : ○○시(○○군·○○구) ○○동 ○○번지 ○○초등학교 내 ○○교실, 운동장, 도서관, 강당, 급식실

(면적 00㎡) ※ 붙임 도면 참조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이하 “학교돌봄터”라 한다)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인계인수)

- ① 건물 등의 관리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장은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계한다.
- ② 학교장은 건물 등을 별첨 설계도면대로 인계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건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 허가기간 등)

- ① 사용 허가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 ② 사용 허가기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

- ①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 ② 학교돌봄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과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돌봄터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장에게 학교돌봄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장의 면책사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교돌봄터 이용자(방문객 포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학교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돌봄터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화재, 재난, 기타 사고 등
2. 학교돌봄터 외의 부속시설(운동장, 도서관, 강당 등)에서 학교돌봄터 이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돌봄터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학교돌봄터 외의 부속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건물 자체에 본래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는 학교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건물 등에 파손,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등에 대해 일체의 원형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우선 선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돌봄터 이용자 모집 시 ○○초등학교 재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9조(학교돌봄터에 대한 부과금)

학교돌봄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각종 공공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의 가입 및 손해보험증서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돌봄터 이용자의 상해, 식중독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 가스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등에 대하여 ○○시·도 교육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건물 등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건물 등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건물 등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단, 사전에 협의·승인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제11조의 위반으로 학교장이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협약의 갱신 등)

이 협약서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 여부 등을 정한다.

제14조(건물 등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건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 배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사용 허가기간 만료 등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돌봄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 학교돌봄터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 학교장

○○○

참고 2**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계획서****양식****○○시(군·구) 학교돌봄터 사업계획서****국고보조 사업계획서****I. 개 요**

신 청 기 관	○○시·도 △△시·군·구 / 부서명 : 담당자 : / 연락처 :
사 업 명	○○시(군·구) 학교돌봄터
사 업 대 상 지	○○시·도 △△시·군·구 - ◎◎읍·면·동 □□ 초등학교 - ●●읍·면·동 ◇◇초등학교 - ◆◆읍·면·동 ♡♡초등학교
사 업 기 간	2021.9~12월
소 요 사 업 비	총 000백만원(국비 00, 교육청 00, 시·도 00, 시·군·구 00)
사업비 산출 내역	- 설치비: - 인건비: - 운영비:
재원, 공간 등 진 행 상 황	- 초등학교, 교육청, 시·도/시·군·구와의 재원 및 공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등

II. 세부 사업 계획 ※ 초등학교 단위로 아래 양식 작성

1. □□초등학교

1 시설사항

장소 (주소)	○○ 초등학교 ()					
사업대상 교실 현황	구분	신설1, 전환2	신설	전환	전환	...
	교실 현황	총 0실	교실1	교실2	교실3	...
	면적	000㎡	00㎡	00㎡	00㎡	...
	층수	-	3층	2층	2층	...
부대시설 현황	- 같은 층 내 남녀 화장실 구비 여부 - 학교 내 운동장 등 기타 시설 활용 가능 여부 - 주차장 제공 여부 - 기타					
리모델링 계획	기간					
	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재료비: • 기타:				
	방법	방수공사, 전기설비, 온돌 등				
	기타					
기타 참고사항 및 건의사항						

※ 교실 현황: *해당 교실의 신설/전환기준 여부, *전체 교실 수, *교실별 면적 및 전체 면적, *교실 층수 등 기재
부대시설: 건물 내 또는 건물 부지 내 활용가능한 부대시설 현황(학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작성)

<시설 위치도>

(지도)	(사진)
【학교 위치도】	【학교 내 교실 사진】

2 운영계획

교 실 명		개 소 일	
서비스 대상	○○ 세 ~ ○○ 세	운영 방식	직영 또는 위탁 위탁시 운영 주체 미정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
운영 시간	4시간 또는 6시간 (국고지원 기준)	(평일) ○시 ~ ○시 (방학) ○시 ~ ○시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돌봄(정기적) - 숙제 및 학습지원 - 프로그램 운영 - 간식제공 - 하교지원		
정 원	명	이용 신청절차	-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이용자 모집 방법(홍보)	- 학교를 통한 안내 -		
채용인원	명	연계인력	
채용방법 및 시기	- 공개 모집 - 인력채용(월)	연계방법	
안전대책	- - - -	지역사회 네트워크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교육청과의 협의회 등 구성 여부 - 지역 돌봄협의회 구성여부 및 운영계획 등 - 기타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회 등 구성 여부
기타	-		

- ※ 1. 운영방식 : 직영 또는 위탁 중 선택
 2. 정원 : 아동 1인당 전용면적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임을 고려, 동시간대 최대 이용 가능 인원 기재(20명 권장)
 3.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4시간 운영/ 6시간 운영 중 1을 택하여(국고지원 기준) 운영시간 기재
 4. 채용인원: 교실당 1명 및 학교당 1명이 원칙이나, 필요 시 자체 자원 등을 통해 추가 인력 배치 가능
 5. 연계인력: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지역사회연계, 아동시설 종사자 연계 등
 6. 안전대책 : 보험가입, 화재관리방안, CCTV, 아동출결시스템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③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계획	비고
'21년 1/4분기	1월		
	2월		
	3월		
'21년 2/4분기	4월		
	5월		
	6월		
'21년 3/4분기	7월		
	8월		
	9월		
'21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작성

(예시)

- 교실 등 학교 내 장소 사용 협약 체결
- 위탁사업자 공모
- 사업위탁계약 체결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 이용자 모집
- 인력채용 모집공고 및 인력채용
- 교실 홍보 및 개소 시기

별첨 1

학교별 업무협약서

※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체결한 학교별 업무협약서 별첨

※ 학교별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 별첨